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

사건번호
신청인(채무자 겸 소유자)
　　○시　○구　○동　○번지
피신청인(채권자)
　　○시　○구　○동　○번지

신　　청　　취　　지

1. ○ ○지방법원　　년　월　일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,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함.

신　　청　　이　　유

1.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　　년　월　일　채권 최고액 금　　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신청인 청구금액의 금원채무를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사실 및 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경매를 신청하여　　년　월　일자 경매개시결정된 사실은 인정한다.
2. 위 부동산의 경매개시결정된 후 신청인은 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매각허가결정 후에야 피신청인에게 원금　　원에다　　년　월　일부터　　년　월　일(완제일)까지 연　%의 지연이자　　원 및 경매비용　　원 합계금　　원정을 변제하고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.
3. 그러나 매수인은 위 경매신청 취하에 동의치 않으므로 부득이 본 이의신청으로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.

첨　부　서　류

1. 경매취하서　　1통
1. 변제증서　　1통

년　　월　　일

위 신청인　　(인)
연락처(☎)

지방법원　　귀중

☞유의사항

1) 경매개시결정후 매수인의 동의가 없을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.
2) 신청서에는 1,000원의 인지를 붙여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, 이의재판정본 송달료를(2회분) 납부하여야 합니다.